

5. 都市ガス事業法 施行規則中 改正令

動力資源部令 第113號 1990. 6. 22 公布.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법 제2조제5호에서 “가스의 제조·공급을 위한 시설로서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도시가스제조사업소(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를 포함한다)로부터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을 말한다)까지에 이르는 배관·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외벽에 설치된 가스계량기를 제외한다.
- ④법 제2조제6호에서 “가스공급시설외의 가스사용자의 시설로서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내관·연소기 및 그 부속설비와 공동주택의 외벽에 설치된 가스계량기를 말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승계신고서)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승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지위승계신고서에 승계인의 신원증명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의2 제2호중 “500미터 미만인 배관의”를 “500미터 미만(최고사용압력이 중압 이상인 배관의 경우에는 공급관의 연장이 300미터 미만)인 배관의”로 한다.

제16조제1항중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을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특정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제외한다)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발전용전기공작물”을 “발전용전기설비”로 하며, 동조제3항중 “1월 사이에 정기검사를”을 “1월 사이에(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의 경우에는 연 1회 공사가 지정하는 기간에) 정기검사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신청인”을 “신청인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로 하며, 동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8항중 “검사신청인은”을 “검사신청인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으로 한다.

⑦ 공사는 중간검사·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가스공급시설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검사신청인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스 사용자(공동주택의 경우에 한한다)의 부담으로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검사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스사용자 대표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제1항중 “2년에 1회 이상”을 “2년에 1회 이상(가스보일러가 설치된 가스 사용시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1)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최고사용압력이 중압 이상인 배관의 300미터 이상의 설치공사

[별표 2] 제3호(7) ④중 “손상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손상을 받지 아니하도록 다음 ⑨ 또는 ⑩에 의한 조치를 할 것”으로 한다.

[별표 3] 제6호 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동목(2)를 삭제한다.

(1)지상에 설치하는 저장탱크 및 그 지주는 내열성의 구조로 하고, 저장탱크 및 그 지주에는 외면으로부터 5m 이상 떨어진 위치에서 조작할 수 있는 냉각 살수장치 등의 유효한 냉각장치를 설치할 것.

[별표 3] 제8호 가목(5) (4)단서중 “저압배관으로서”를 “사용압력이 $4\text{kg}/\text{cm}^2$ 이하인 배관으로서”로 하고, 동호동목(25)를 삭제하며, 동호동목에 (2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압력조정기	(29)압력조정기를 설치(7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한한다)하는 경우 그 압력조정기는 가스용품 검사에 합격한 제품일 것.
-------	---

[별표 4] 제1호 (1)(4)단서중 “저압배관으로서”를 “사용압력이 $4\text{kg}/\text{cm}^2$ 이하인 배관으로서”로 하고, 동호(31)을 (32)로 하며 동호에 (3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1)정압기를 설치하는 경우 그 정압기는 별표 3 제7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별표 4] 제2호(5)(4)단서중 “저압배관으로서”를 “사용압력이 $4\text{kg}/\text{cm}^2$ 이하인 배관으로서”로 하고, 동호에 (2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 정압기를 설치하는 경우 그 정압기는

별표 3 제7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
할 것.

[별표 11] 제2호(4)목을 삭제하고, 동표
제4호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비 고

1. 교육대상자별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등은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
사가 정한다.
2. 특별교육 및 양성교육을 이수한 연도
중에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19조제4
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을 이수한 연도중에 정기교육대상
자가 된 자는 당해 연도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4.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 23
제4호 나목(1)의 교육을 이수한 자는
나목(1)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소

지자 중 신규종사자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13] 제2호4 배관란1의 가 및 제3
호7 배관란의 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
다.

가. 연장이 2km 미만인 것.

[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제서식: 생략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
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 규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
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개정이유 ▷

기술의 발달과 가스사용의 보편화에 따라 현실과 상이하게 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여 가스사용자 및 가스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현행 규정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 가. 도시가스시설 중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의 한계가 불분명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것을 가스공급시설은 도시가스제조업소로부터 가스사용자 소유의 토지 경계까지, 가스사용시설은 가스사용자 소유의 토지경계로부터 연소기까지로 하여 명확히 구분함(제2조제3항 및 동조제4항).
- 나. 모든 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면 안전점검을 가스보일러가 설치된 가스사용시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여 가스로 인한 중독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함(제30조제1항).
- 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이수한 자가 같은 연도에 정기교육 대상이 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정기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별표 11).
-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소지자 중 신규종사자가 고압가스안전관리 법의 규정에 의한 동일 종류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별표 11).

〈동력자원부 제공〉